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. 3. 8 선고 2023가단248124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2. 23.

판 결 선 고 2024. 3. 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77,753,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5. 1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신청원인' 기재와 같다(다만, '채권자'는 '원고'로, '채무자'는 '피고'로 본다)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박소영

별지